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2. 18 선고 2019가단128064 판결 [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

담당변호사 유택근

피고D

변론 종결2020. 2. 4.

판결 선고2020. 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9,400,000원과 그 중 29,800,000원에 대하여는 2018. 3. 13.부터, 59,6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8.부터, 각 2020. 2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한윤옥

별지